㈜호텔롯데 롯데월드	ABMS	REVISION	01
	뇌물방지경영시스템 수립	문서번호	LW-ABMS-2017-03

## 1. 뇌물·부패방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

#### \* 조직의 목적

우리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각자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객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기 위한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정하여 임직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확립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특히, 공정한 기업문화를 확립에 있어 임직원 모두는 뇌물수수 및 부패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뇌물과 같은 부패행위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경제적으로 막대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입게 되며 신망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관여한 임직원들의 경우 벌금, 과태료,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을 서약합니다.

우리는 뇌물수수 및 부패의 관여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 것을 약속합니다. 뇌물 수수와 부패는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업무 내에서 또는 우리와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 간에도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고 솔직하게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뇌물수수・부패의 위험에 대한 적용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개선할 기회를 찾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뇌물수수의 위험에 맞서기 위하여 내에서의 효과적인 뇌물방지경영 체제를 실시 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뇌물방지책임자로서 본 방침의 이행과 그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질문을 적절 하게 처리되는 것의 보증에 관해서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뇌물수수 및 부패에 관한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본 방침에 관한 질문은 윤리경영팀 (worldsmg@lotte.net)으로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호텔롯데 롯데월드	ABMS	REVISION	01
	뇌물방지경영시스템 수립	문서번호	LW-ABMS-2017-03

당사를 뇌물 및 부패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모두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 2. 당사의 최고 경영자는 뇌물 방지 방침을 수립하고, 검토 및 유지합니다.

# 2.1 방침의 목적

본 방침은 당사 및 관련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금지하며, 본 방침에 위배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회사 내규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 2.2 상황에 알맞은, 위험을 고려한 대처

본 방침 및 관련하는 뇌물 부패방지 절차는 당사가 직면하는 뇌물 부패에 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보장합니다.

#### 2.3 뇌물 및 부패방지법

우리 국가(부정청탁금지법 및 일반 형사법), 미국, 영국의 뇌물 부패방지법을 포함하여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되는 법령을 포함합니다.

#### 2.4 부패(뇌물)방지법 위반의 결과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비롯한 국내 및 거래당사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에게 상기 법규를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국내외 부패(뇌물)방지법을 위반하면, 당사의 임직원은 과료, 금고, 보수의 환불 등을 포함한 형사상, 민사상 및 정해진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법의 위반은 당사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신용적 손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뇌물 부패에 관계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은 형사제재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적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입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 그룹은 법적 책임을 상당히 고려하게 됩니다.

# 3. 본 방침의 위반

#### 3.1 신고의무

㈜호텔롯데 롯데월드	ABMS	REVISION	01
	뇌물방지경영시스템 수립	문서번호	LW-ABMS-2017-03

본 방침의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즉시 그 증거(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 및 데이터를 포함함)를 보존하고 이를 윤리경영팀에 신고합니다.

신고 내용 및 신고 임직원의 이름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되며 신고 임직원은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또한 신고 임직원의 기여 사항은 업무평가 등에 반영됩니다.

## 3.2 징계처분

임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본 방침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합니다.

임직원이 그의 부하 직원에게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자신의 부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에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임직원은 회사로부터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기타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방침을 위반한 종업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위법행위로 인한 면직이나 기타 고용의 종료를 포함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 3.3 제3자와의 계약의 종료

당사와 함께 일하는 제3자가 본 방침이나 기타 적용되는 뇌물 부패방지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그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권리를 계약서에 삽입하고,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임직원은 제3자와 거래 시 회사의 본 규정을 충분히 전달하고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이 되는 경우 조사 권한과 거래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단, 거래의 성격,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